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17년 11월 16일

명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**	김** 1990-08-10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나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7-11-14